

인공지능 무기화와 인간의 자리 : 국제규범의 지연과 한국사회의 선택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戰場)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AI 군사 기술의 가속화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첨단화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국제규범을 뒤흔들고 생명의 존엄성에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된 자율드론 군집의 운용, 가자지구에서 보고된 라벤더(Lavender) 및 '합소라(Habsora)' 등 AI 기반 표적 생성 및 식별 시스템의 광범위한 실전 투입, 그리고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오인 폭격 사건 등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재앙이 더 이상 미래의 가상이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자율살상무기체계 및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1) 개념과 스펙트럼: AI 자율무기에서 의사결정지원까지

오늘날 전장에 등장하고 있는 AI 기반 무기체계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넓은 스펙트럼을 이룬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2025년 7월 발간한 보고서(A/HRC/60/63)는 이 스펙트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편에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AI-enabled tools)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개입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이 작동하는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s Systems, AWS)가 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모든 인공지능 기반 체계가 자율적인 것은 아니며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이 두 범주를 개념적으로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규제 회피의 온상이 된다고 경고한다.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는 통상 인간 운용자의 개입 없이 표적을 탐지·식별·선정·교전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무기 및 기술의 결합체로 이해된다. 리비아 내전 당시 인간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르구(Kargu)-2와 같은 배회형 무기(loitering munitions), 레이더 신호 기반 자율 요격 시스템, '발사 후 망각(fire and forget)' 방식의 자율 비행체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이미 우크라이나·가자지구를 비롯한 여러 분쟁 현장에서 실전 운용이 보고되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AI-DSS, AI-based Decision Support System)의 위험성이다. 이 체계는 자율무기가 아닌 '지휘·통제 보조 도구'로 분류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만, 실제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단계를 장악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공개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MSS)은 그 단적인 사례다. 위성·드론·전자정보를 통합하고, 컴퓨터 비전이 표적 객체를 자동 분류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표적 순위와 공격에 대한 법적 정당화 초안을 생성하며, 90건 이상의 동시 공격을 위한 '사전 패키지 표적 세트'가 생성되는 구조에서 인간 지휘관은 사실상 묶음 표적을 일괄 승인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이처럼 "자율무기가 아니다"라는 분류가 실질적인 자율 표적 선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2) AI 군사 기술이 국제인권법에 가하는 구조적 위협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군사 분야의 신기술이 국제인권법 준수에 가하는 위협을 네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무력 사용의 비인간화다. 알고리즘에 의한 분류와 표적화는 인간의 생명을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판단에 내재된 도덕적·윤리적 고려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인간화가 생명권, 신체적·정신적 완결성, 차별 금지, 인간 존엄성 등 국제인권법의 초석이 되는 원칙들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둘째, 인간 통제의 침식과 책임 귀속의 불분명함이다. 자율무기체계는 자동화 및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므로 인간의 감독과 책임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시스템이 높은 자율성으로 작동할수록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자율무기체계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담당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기존 국가 책임 체제만으로는 책임 귀속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결국 이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가혹행위 금지 원칙 위반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기술 격차와 권력 비대칭의 문제다. AI 군사 기술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 개발되어 해당 기술 개발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 배치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는다. 남반구 국가들은 군사 신기술 개발과 관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의 사용으로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격차를 넘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넷째,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무규제 군사 전용 문제다. 드론, 안면인식,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등 상업·공공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아무런 법적 제동 없이 무기화된다. 보고서는 법적 틀과 신기술의 실제 적용 사이의 잠재적 격차에 주목하며, 특히 분쟁 지역에서 기술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예상되는 인권 문제를 반드시 사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법적 검토의 구조적 한계

자율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심층신경망(DNN) 기반 자동표적인식(ATR,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시스템은 인간의 인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공지능은 패턴을 양적으로 축적·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반면, 인간은 맥락과 의도, 감정을 포함한 전체론적·질적 인식을 수행한다. 이 구조적 차이는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 전투 능력 상실 여부 판단, 항복 의사 인식 등 국제인도법이 요구하는 핵심적 평가적 판단을 알고리즘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적대 세력에 의한 이미지 교란 공격(adversarial image attack)에 취약하다는 점도 전장에서 오인 사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자율무기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법적 검토에 고유한 과제를 제기한다고 명시한다. "기계 기반 의사결정이 인권 원칙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자율무기체계가 국제법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음"을 보고서는 솔직히 인정한다. 생명권, 신체적·정신적 완결성, 차별 금지,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국제인권법 의무와의 부합 여부,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 의도치 않은 결과의 잠재적 위험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법률 검토가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오늘날 전장에서 목격되는 자율살상무기체계와 AI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급속한 확산은 단순한 무기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 결정 권한을 알고리즘에 점진적으로, 그러나 돌이키기 어렵게 이양하는 과정이며, 국제인권법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 온 생명 보호의 법적 건축물을 그 토대에서부터 흔드는 도전이다.

3. 자율살상무기체계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논의 과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율살상무기체계 전문가회의(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CCW GGE LAWS)는 CCW 당사국회의(Meeting of High Contracting Parties) 결정으로 2016년 출범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다.

2012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인권클리닉이 발표한 보고서 "Losing Humanity"는 국제사회에서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CW 당사국들은 2014년부터 비공식 전문가 회의(Informal Meeting of Experts)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위한 협상보다는 개념 정립과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룬 시기였다. LAWS에 대한 CCW 차원의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11월 CCW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5월 첫 비공식 전문가 회의가 개최된 이래, 회의는 2017년부터 전면적 정부전문가그룹(open-ended GGE)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후 유엔 군축사무소(UNODA),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수많은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6년 제5차 검토회의(Fifth Review Conference)에서 당사국들은 공식적인 정부전문가그룹(GGE) 설립에 합의했고, GGE LAWS는 2017년부터 공식 회의를 시작했다. 당사국들이 CCW를 LAWS의 공식 논의 체계로 선택한 것은 제도적 연속성과 눈멀게 하는 레이저 무기 금지에 관한 제4 의정서(Protocol IV)의 선례, GGE라는 유연한 공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원합의 원칙(consensus rule)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규범 형성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CCW는 눈멀게 하는 레이저무기, 확산탄, 부비트랩 등의 특정 무기들을 규제해 온 군축 협약, 즉 기존 재래식 무기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어온 협약이기 때문에, 자율무기 역시 재래식 무기의 연장선에서 같은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LAWS는 IHL(국제인도법) 준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정서 IV의 선례는 1995년 채택된 눈멀게 하는 레이저 무기 금지 의정서(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Protocol IV to the 1980 Convention))를 의미한다. 눈멀게 하는

레이저 무기는 세계 최초로 아직 전장에 광범위하게 배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체계이다. 자율무기체계 규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LAWS 역시 배치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논거로 이 의정서를 끈는다.

셋째, 정부전문가회의(GGE)라는 유연한 공간이자 도구가 있는 CCW의 구조상 정식 협약 개정 없이도 GGE라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탐색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으로 여겨졌다. 이 유연성 덕분에 2014년부터 구속력 없는 비공식 논의를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전원합의 원칙(Consensus rule)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2019년 GGE 회의에서는 11개의 이행원칙이 채택되었다.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무기체계 사용 관련 인간의 책임 유지, 자율살상무기의 인격화(anthropomorphize) 금지, 자율기술의 평화적 사용 방해 금지 등을 포함한 이 원칙들은 이후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와 시민사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CCW의 전원합의 원칙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단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결과물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10년의 임기가 다 되어가도록 실질적인 협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22년 CCW 당사국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컨센서스를 거부하여 연간 GGE 회의 일정 자체가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탑킬러로봇은 2022년에 이미 "9년간의 논의에도 CCW는 아무런 국제적 제한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일부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절차적 교착을 유발하고 있다"고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¹ CCW의 컨센서스 원칙은 약소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술 강국들이 규제를 막기 위해 역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협상을 의도적인 교착상태에 빠뜨려온 국가로는 러시아, 이스라엘, 호주, 대한민국, 미국,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자체에 반대하거나, 논의를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2026년 11월에 개최될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검토회의는 지난 10여 년간 지리멸렬하게 이어져 온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논의를 종식하고,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규제를 구속력 있는 조약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국제사회는 기술적 오작동의 위험과 책임 귀속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대다수의 국가가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결정적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인간 생명권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재정의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선: 자율살상무기와 인간의 존엄성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유엔 총회 사무총장 보고서(A/79/88, 2024.07.01.)에서 "The autonomous targeting of human beings by machines is a moral line that must not be

¹ Stop Killer Robots (2022), Russia leads an assault on progress at UN discussions, the CCW has failed, <https://www.stopkillerrobots.org/news/russia-leads-an-assault-on-progress-at-un-discussions-the-ccw-has-failed/>

² WILPF (2025), Reaching Critical Will, AWS Diplomacy Report, Vol. 2, No. 1 <https://reachingcriticalwill.org/disarmament-fora/others/informal-consultations-laws/reports/17475-aws-diplomacy-report-vol-2-no-1>

crossed(기계에 의한 자율적 인간 표적 선정은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선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의 판단과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알고리즘의 생사 결정은 국제법의 인도주의적 근간인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 즉 공공양심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한다. 마르텐스 조항은 기존 조약 체계의 규정이 미비한 공백 상태에서도 확립된 관습, 인도주의 원칙, 공공양심의 명령에 의하여 인간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1982년 가입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기계에 의한 자율적 인간 표적 선정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선이며, 인류의 공공양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기술적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기계적 알고리즘은 인간을 고유한 엄연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심층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 기반의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은 인간의 생명을 단지 처리하고 분류해야 할 기계적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로 환원할 뿐이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기계는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생명의 무게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더욱이 심층신경망(DNN) 기술은 전장의 유동적이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엄밀히 구별하거나, 부상을 입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자(Hors de combat)를 식별하거나, 항복 의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질적·평가적 판단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자율살상무기가 국제인도법(IHL)의 핵심 원칙인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예방조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본질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2026년 3월 입장문서): 국제인도법(IHL)은 적대행위 수행 시 구별, 비례성, 예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적 판단을 인간이 자동화 기술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기계 과정에 위탁될 수 없으며, 위임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아울러 민간인이 존재하는 운용 지역에서 IHL 위반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대인 자율무기체계가 합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⁴
- 휴먼라이츠워치(HRW)(2025 UN총회 비공식협의 성명): 사람을 데이터 포인트로 환원하고 기계·소프트웨어·알고리즘에 생사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떤 기계도 인간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없으며, 전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⁵
- 휴먼라이츠워치(HRW) & 하버드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2025년 4월 공동 보고서): "자율무기체계와 디지털 의사결정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최소 6가지 핵심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인권법상 살상은 오직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최후의 수단일 때만 합법적인데, 자율무기체계는 이러한 맥락별 판단에 필수적인 인간적 판단과 공감 능력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³ Christof Heyns(2017), "Autonomous weapons in armed conflict and the right to a dignified life: an African perspective",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Vol. 33(1), pp. 46-71

⁴ ICRC(2026),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CRC Position Paper),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2026-03/4896_002_Autonomous_Weapons_Systems_-_IHL-ICRC.pdf

⁵ Human Rights Watch (2025), "Legal Considerations"

<https://www.hrw.org/news/2025/05/12/statement-legal-considerations-unga-meeting-lethal-autonomous-weapons-systems>

5. 「국방인공지능기본법」의 구조적 모순과 규제 공백 분석⁶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의안번호 2216355)은 표면적으로 국방 AI 도입의 체계화와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안전 기준과 규제를 무력화하여 '원칙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을 품고 있다.

특히 본 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AI 입법의 거대한 규제 진공 상태를 짚어야 한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일반 「인공지능기본법」은 제4조 제2항을 통해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제작·수입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국방 안보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은 그 공백을 엄격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적 기준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 AI 기술에 대한 관련 규제를 전부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이중 규제 공백'을 법제화하고 있다.

본 법안의 주요 조항이 내포한 실질적 위험과 규제 공백은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법안 조항별 명목상 취지와 실질적 위험 및 규제 공백 】

법안 조항	명목상 취지	실질적 위험 및 규제 공백
제3조 (기본방향/인적개입)	책임 있는 개발 및 활용, 위험의 체계적 완화 보장	구체적인 통제 기준, 이행 시점,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전무하여 실효성 없는 명목상 '선언'에 불과함
제14조 (획득 특례)	신속한 전력화 지원	신속 전력화를 명분으로 필수적인 사전 안전성 검증 및 소요 절차 생략 가능성 활로 개설
제17조 (민간 AI 도입)	적극 도입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도입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권·윤리적 영향평가 없이 평화적 기술이 '강제적 무기화'로 전용될 수 있는 통로 마련
제18조 제3항 (규제 특례)	실증 및 군사적 활용 촉진 지원	국방부장관 등이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완벽한 법적 진공 상태 형성

출처: 피스모모(2026),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검토보고서: 기계에서 살상을 위임하는 국가

⁶ 피스모모(2026),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검토보고서: 기계에서 살상을 위임하는 국가,
<https://peacemomo.org/report-military-ai-act/>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원칙'은 형식적인 수사로 선언해 두고, '특례'와 '예외'가 실질을 지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욱 기만적인 부분은 법안의 그 어디에도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라는 핵심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이 규율하는 국방인공지능사업의 범위와 무기체계 적용 대상은 사실상 LAWS를 완벽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어를 은폐한 자율살상무기의 합법적 개발과 실증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6. 책임의 익명화: 알고리즘 뒤로 숨는 '설계된 무책임'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이 초래할 가장 치명적인 법적·도덕적 재앙은 바로 '책임 공백(Accountability Gap)'의 제도화이다. 기계가 스스로 표적을 정하고 살상을 감행했을 때, 만약 심각한 민간인 오폭이나 국제인도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알고리즘을 코딩한 설계자인가, 무기를 배치한 지휘관인가, 아니면 국가 자체인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단 한 줄의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적 미비가 아니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무책임'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명확하고 실질적인 통제 구조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인적 개입은 전장의 고속화된 흐름 속에서 단순한 '기능적 자동화'에 종속될 뿐이다. 인간 지휘관이 스크린에 표시되는 알고리즘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명목상의 인적 개입은 실질적인 자율 표적 선정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기계적 결정에 인간이 도장만 찍는 구조 속에서 인간은 살상의 도덕적 책임을 기계에 전가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받는 '도덕적 완충지대'로 전락하게 된다.⁷

피스모모의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제3조가 명시한 '인적 개입 보장'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치명적인 공백과 결함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부작위(不作為)에 의한 자율 살상 방치'로 볼 수 있다.⁸

- 1) 판단 기준의 미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객관적 절차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 2) 개입 내용의 모호성: 인적 개입의 실질적 내용이 단순히 가동 중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오작동이나 민간인 감지 시 타격을 즉각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 거부권(Veto)의 행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 3) 시점의 불확실성: 인간의 개입이 표적을 선정하고 식별하는 단계를 포괄하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리즘이 표적 결정을 끝내고 무기가 발사되기 직전 혹은 발사된 이후의 형식적인 시점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극한 상황 대처 능력의 부재: 밀리초(millisecond) 단위로 전개되는 초고속 교전 상황이나 통신이 차단되는 네트워크 거부 환경(D2D)에서, 인간의 인지 속도로 실질적 인적 개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⁷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2025),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군사 표적 선정(한글번역: 피스모모)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5-12/ko_laws_v.pdf

⁸ 피스모모(2026),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검토보고서: 기계에서 살상을 위임하는 국가, <https://peacemomo.org/report-military-ai-act/>

5) 사후 제재 규정의 전무: 지휘관이나 운용자가 인적 개입 보장 원칙을 위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율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인도주의적 참사를 유발했을 때 이를 처벌할 형사 처벌 조항이나 엄격한 사후 책임 추궁 법조항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6) 독립적 검증 기제의 결여: 군 내부의 보안 논리를 넘어, 인적 개입이 전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감사할 사법부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검증 기구가 배제되어 있다.

7) 안전장치(Kill Switch) 탑재 의무화 누락: 알고리즘의 예기치 못한 오작동, 심층신경망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 비상 상황 시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전면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비상 정지 메커니즘의 탑재 의무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7. 국제 규범의 지연과 한국의 전략적 모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군사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REAIM)' 고위급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며 자신들이 군사 AI의 책임 있는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수사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REAIM의 정체성은 모호하다. 2026년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열린 REAIM 차 회의 결과로 군사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문서 '행동을 향한 길(Pathways to Action)'이 채택되었으나, 전체 85개 참여국 중 문서에 서명한 국가는 35개국에 불과했다.

그 뿐 아니라, CCW GGE(정부전문가그룹) 협상장 안에서의 실제 행보는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등 규제에 반대하는 소수의 중무장 국가 및 군사 대국들과 손을 잡고 규범 제정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전원합의 원칙(Consensus)을 방패 삼아, 법적 구속력 있는 자율살상무기 금지 및 규제 조약을 성안하려는 130여 개국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지연국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외교적 자기모순은 심각한 정책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한 무차별적 군사 작전과 비인도적 민간인 살상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대열에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네바 CCW 협상장에서는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기술 개발 및 자율무기 규제 회피 논리에 철저히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REAIM 담론은 구체적인 법적 금지 조항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귀속 메커니즘이 완전히 소거된 채, 오직 국내 방위산업의 수익성 있는 'AI 군사 기술 수출'을 규범적 비판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포장용 수사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LAWS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보인 모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1) '치명적(Lethal)' 용어 고수를 통한 규제 축소 시도: 자율무기체계의 정의를 내릴 때 반드시 '치명적(Lethal)' 무기로 한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체에 심각한 영구 장애를 입히거나 민간 시설을 파괴하는 비치명적 자율 무기체계를 규제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려 한다.

2) '식별(Identify)' 기능의 협소한 한정 주장: 규제 대상을 알고리즘이 표적을 '식별(Identify)'하고 타격하는 전 과정으로 확장하는 대신 극히 좁은 의미의 정의만을 고집함으로써, 현재 개발·운용 중인 기존 자동화 시스템들을 규제망에서 대거 탈출시키려 한다.

3) 테스트 및 연구 목적의 규제 면제 요구: 무기체계의 개발, 연구, 실험 단계에서는 국제인도법적 제한이나 민주적 통제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무기가 완성되어 전장에 배치되기 전 단계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원천 방지하려 한다.

4) 평화적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한 이중용도(Dual-use) 무기화 정당화: 자율주행, 로봇공학, 민간 AI 알고리즘 등 상용 기술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의 평화적 기술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군사적 살상 기술로 전용되는 이중용도 통제 거버넌스의 수립을 거부한다.

5) 국제사회의 구속력 있는 협약 개시 성명 불참: 2025년 9월 브라질을 비롯한 42개 조약 지지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자율무기 규제 협상 개시 성명'에 불참하였으며, 2026년 3월 회의에서 70여 개국이 명확히 지지 의사를 밝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 움직임에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

8. 한국의 AI 법제 군사분야 관련 현황과 이중 공백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으로 주목받았는데, 단일 국가로서는 사실상 첫 포괄 입법이다.

이 법에서 군사 분야를 직접 다루는 조항은 사실상 단 하나, 제4조 제2항뿐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2항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규율이 아니라 '적용 제외'를 위한 조항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의 구체적 범주는 시행령 제2조에 위임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운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제4조 2항에 의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공지능을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들로 열거하고 있다. 방첩과 대테러, 국가핵심기술 보호, 공급망 조기경보, 국방정보화사업, 경찰의 정보 수집·배포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넓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의 범주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정하는 인공지능이 포함됨으로써 범주가 무한하게 확장된다. 이는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2항을 통해 법 바깥에 놓이는 예외적 인공지능의 목록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 적용 제외 대상만이라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큰 정보 수집·추적·대테러 관련 항목은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2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군사-안보 분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위임 범위 일탈 지적: 인권위는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안 제2조에는 국방·국가안보 목적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중용도(dual-use)' 성격의 업무까지 포함돼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용 제외 대상 인공지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정 주체의 전환 권고: 특히 인권위는 국방·국가안보 목적 인공지능이 국가 안전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생명권 침해 등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026년 1월 27일, '국방인공지능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제정안이다. AI 기본법이 국방·국가안보 목적 인공지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4조)하면서,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를 규율할 별도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인공지능법안의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1)정책·거버넌스에 관한 조항들 - 기본방향으로 국가안보·국방력 강화와 안전성·신뢰성·책임성 확보를 명시(제3조 제1항), 국방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방인공지능위원회·분과위원회 설치(제5·6·9조),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제11조)- 과 2)개발·전력화 촉진에 관한 조항들 -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에 AI를 적용해 도입·운용할 때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면 획득 방법·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신속획득 특례(제14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특례(제18조 제3항), 민간 AI 기술 도입(제17조), 데이터 표준화·학습데이터·데이터센터(제15·16·22조), 인력 양성과 실증 기반(제20·21조) - 그리고 3)안전관리에 관한 조항들 - 국방기술품질원 내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제12조), 안전성 확보 시책 및 수명주기 위험관리(제23·24조)- 이 있다.

해당 법안에서 인도주의 및 인권적 규범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은 ‘인간통제’를 언급하고 있는 제3조 제3항이다.

제3조(기본방향) ③ 국방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개입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인적 개입의 실질’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AI-DSS의 사례들은 인간 통제가 이미 형식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중대한 위해의 판단 기준이나 인적 개입의 방법·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긴박한 전장 환경에서 인적 개입이 이미 AI가 내린 분석·판단에 대한 형식적 승인에 머물지 않도록 규제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14조의 신속획득 특례, 18조 3항의 규제특례를 비롯하여 민간기술의 군사전용을 촉진하는 현 법안은 인적 통제를 구체화하기 보다는 면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책임 귀속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며, 유일한 책임 귀속 관련 조항은 제30조의 비밀 누설 처벌에 그친다.

따라서 AI 기본법 제4조 2항이 국방·안보 분야의 인공지능을 통째로 예외로 둔 상황에서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은 인적 통제의 공백을 채우기 보다, 이중으로 그 공백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 고영향 AI보다 군사 AI가 더 느슨한 규율을 받는 구조가 유지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자율살상무기를 둘러싼 국제 규범 논의가 분기점을 지나는 지금,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질문이다. 요컨대 한국 AI 기본법의 군사 분야 현황은 ‘규율의 부재’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 AI 기본법은 군사 인공지능을 다루는 대신 ‘예외’의 범주에 둬으로써 ‘책임의 공백’을 만들었고, ‘국방인공지능법안’은 그 공백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국방인공지능법안이 채워야 할 공백의 기준은 이미 국제규범 안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약의 정서는 제36조에서 새로운 무기·수단·방법을 연구·개발·획득·채택하는 모든 단계에서 그 사용이 국제법상 금지되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 법안은 이러한 법적 검토(legal review) 의무를 명문화하기는커녕, 신속획득 특례와 규제특례를 통해 오히려 그 심사의 관문을 우회한다.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인 구별·비례성·사전예방은 선언적 '기본방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로 전환되어 자율기능이 이 원칙들을 충족하는지를 전격화 이전에, 그리고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검증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AI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이중용도 국면에서는 국제인도법 준수 검토와 함께 인권영향평가(HRIA)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자체의 안전장치에 과의존하는 현 구조를 시정하려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OECD 책임 있는 기업경영 실사지침이 요구하는 인권실사 의무가 방산·군사 AI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적 개입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표현은, 인간이 개별 표적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시간, 그리고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 통제권을 갖는 '유의미한 인간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로 구체화되고, 이를 담보할 킬 스위치와 정기적 시험 절차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지휘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그리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right to remedy)를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인간존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광범위한 규율 예외는, 생명과 직결된 무력의 문제를 시민의 감시와 의회의 통제 바깥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개인의 생명권 문제일 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안보의 이름으로 결정할지에 시민이 참여할 정치적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술 및 산업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한국의 국방 AI 관련 법안은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마저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예외가 여전히 민주적 통제 및 견제의 범주 안에 있도록 하는 촘촘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첫째, 국방인공지능법안에 명시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에 군사 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현 공백을 보완하는 것, 둘째,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36조와 무기거래조약 6·7조의 국내이행체계를 신기술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하고 그 이행의 실질을 확보하는 것, 셋째,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한 군사분야 책임 있는 AI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C REAIM)의 Responsible by Design(2025) 보고서가 제시했듯, 군사 AI의 윤리 및 규범 준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내재화(responsibility by design)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9.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의 책임: 한국산 자율무기와 글로벌 위험

대한민국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계 9위의 국방비 지출국이며, 2025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나 급증하여 201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6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천명하였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무려 83%라는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거대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외형적 성장 뒤에는 그에 걸맞은 국제법적 책임과 규범적 균형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다.

국내법상 자율살상과 관련된 그 어떤 엄격한 안전 기준도, 인권 영향평가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 AI와 자율 기능이 접목된 무기 체계가 'K-방산'의 브랜드로 분쟁 지역이나

인권 침해 우려국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죽음의 자동화'와 '책임 없는 살상 테크놀로지'를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방산 기업의 경제적 수익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국가 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관한 중대한 도덕적 오점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24년 5월 유엔총회가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결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의 무기 및 군수물자 수출을 지속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⁹

현행 수출통제 시스템의 한계는 매우 명확하다:

-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의 이중 구조적 한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통제는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중화되어 있지만, 두 법령 모두 무기가 이전되는 국가의 분쟁 위험도, 민간인 학살 가능성, 수입국의 인권 침해 이력에 대한 사전 '인권영향평가(HRIA)'나 '국제인도법(IHL) 적합성 심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2026년 9월 시행)의 한계: 최근 시행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조차 방산 업체의 외국인 채용 통제나 핵심 군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 세계 민간인의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수출 통제 공백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철저한 규제와 검증 없는 자율살상무기 및 AI 기술의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장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구조적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 자산과 보편적 규범 가치를 거래한다면, 그 대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규범들이 국내이행체계를 갖추도록 신기술과 유망기술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10.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인도주의 및 인권 규범에 기반한 선택을 위한 제언

기술의 무한한 진보와 군사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결코 앞설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최근 만난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인도주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많이 뒤처져 있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바로 그 '따라잡기'의 시간 동안, 지난 10년 이상 아무런 제재 없이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실전에 투입되어 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기술 개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편화되었고, 이제 자율살상은 특수한 사례가 아닌 전쟁의 표준 문법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없는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뒤처진 한국'을 구하는 길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를 더 깊은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데 동참하는 것인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위임받은 권력이 보편적 인권 규범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방위산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 앞에 멈추어 설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결된 존재들로서 모두의 존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에 분노할 수 있는 시민들이라면, 기계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살상하는 세계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다. 그 분노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언어가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생명 존엄의 편에 서게 된다.

⁹ 한국→이스라엘 무기수출, 가자지구 분쟁 후 더 늘어,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용혜인)

기계에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국가를 용인할 것인가? 전장의 효율성과 방산 수출의 상업적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나를 자율살상무기체계 앞에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